

[일련번호 : 18]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자율방재단 급량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1. 업무개요

♡♡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등 필수 활동비가 지원 범위에 해당되며, 제3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등은 제10조제2항의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총괄 부서인 안전재난과가 각 동에 시달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현장 활동 급량비 교부 안내에 따르면 방재단 인원 수 ×9,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대상은 지역자율방재단원(공무원 제외)를 명시하여 급량비를 교부하고 있다. (활동일지 및 참석자 서명부 첨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급량비 예산과목)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활동수당 및 상해치료비, 식비 등을 말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매식비 지급 단가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방재활동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원(민간인)을 대상으로 급량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등 부적정한 대상자에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지역자율방재단 급량비 지급 부적정 내역

연번	사용일	집행 대상	지출금액	지적사항
1	2024.12.5.	♣♣동장, 담당주무관 및 자율방재단원 17명	153,000원	- 매식비 지급 단가 미준수 (자율방재단 참석자 12명 x 9,000 = 108,000원) - 집행대상 부적정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